



사이타마현의 마스코트 코바톤

- 1 소득세
- 2 주민세
- 3 기타 주요한 세금

일본에 거주하는 분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신 세금은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토목, 복지, 의료를 비롯한 문화, 환경, 산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주요 자원입니다.

주된 세금으로 소득세(국세)와 주민세(현민세·시정촌민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나 주민세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국간 조세조약에 의해 예외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일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세금은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납세하셔야 됩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에 따라 연체세(금)이 징수됩니다. 또한 체납한 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재산 차압 등 체납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납세의 방법, 현세의 설명(사이타마현 세무과 홈페이지)

<https://www.pref.saitama.lg.jp/a0209/z-kurashiindex/z-kankoubutsu.html>

1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얻은 모든 소득에 과세됩니다.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의 정산 방법은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연말조정
- 확정신고

(1) 연말조정

급여등을 지불하는 사람은 급여등의 지불시, 그 지불금액에 따른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를 제하고,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급여소득의 경우, 급여의 지불자는 급여지불시 원천징수를 하고, 또한 그 해의 마지막 급여를 지불할 때 1년간의 급여 총액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및 복구특별소득세의 합계금액을 계산해, 그때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와의 과부족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연말조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조정을 받은 급여소득만 있는 분은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의 정산이 끝난 것이므로 다음 (2)의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할 때나 일정의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의 환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의 지불자로부터 교부받은 [급여소득 원천징수표]가 필요합니다.

(2) 확정신고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신고의무가 있는 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의 금액과 그에 대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의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기간내에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받은 세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부족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 등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분
- 그 연도중에 지불 받은 급여 등의 금액이 2,000 만엔을 넘는 분
- 한 곳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분으로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 만엔을 넘는 분
- 2군데 이상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을 받는 분으로 연말조정을 받지 않는 부업 등의 급여분의 금액과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금액과의 합계금액이 20 만엔을 넘는 분
- 재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분이나 가사도우미 등으로 급여 지불을 받을 때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되어있는 분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적연금 등 (외국에서 지불되는 공적 연금 등)의 지급을 받고 있는 분

(3)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

① 급여소득만이 있는 경우

근무처에 연말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의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②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방법

사전에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의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는 방법

본인이 출국전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합니다(준확정신고).

2 주민세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주민세(현민세와 시정촌민세)가 과세됩니다. 주민세는 1월 1일 현재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과세되며 세액은 그 사람의 전년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1)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지불자가 제출하는 급여지불 보고서에 입각해 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시정촌장이 주민세액을 산정합니다. 이 세액은 통상 5월 31일까지 급여지불자에게 통지됩니다. 급여지불자는 그 해의 6월에서 다음 해의 5월까지 12개월 동안 지불하는 매달의 급여에서 이 세액을 공제하고 지자체에 납입합니다.

(2) 급여소득자 이외(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의 신고에 입각해서 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지자체장이 주민세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신고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사람은 주민세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정된 세액은 지자체에서 송부되는 납세통지서에 의해 통보됩니다. 이 납세통지서에 입각해서 6월, 8월, 10월, 다음해의 1월 4번으로 나뉘어서 주민세를 납세합니다. 납기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일본에서 출국(귀국, 1년 이상의 기간 일본을 떠남)할 경우

일본에서 출국 후의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해서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거나 아니면 출국 전에 주민세의 전액을 납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세한 것은 각 지자체 주민세 담당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3 기타 주요한 세금

(1) 소비세·지방소비세(국세·지방세)

의료, 복지, 교육 등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물품의 구입이나 대여,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세율 10%(표준세율)이 합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음식료품(술, 외식은 제외) 등의 구입에 드는 세율은 8%(경감세율)입니다.

(2) 자동차세(종별할) (현세)

4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5월에 현자동차세 사무소에서 송부하는 납세 통지서로 납부합니다.

(3) 경자동차세(종별할) (지자체세)

배기량이 660cc 이하의 자동차나 이륜차 등의 4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5월에 지자체에서 송부하는 납세 통지서로 납부합니다.



상담창구 · 문의처

국세(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서명	전화번호	소재지	접수시간
가와고에 세무서	049-235-9411	가와고에시 오야자 나미키 452-2	월~금 (공휴일·연말연시 제외) 8:30~17:00
구마가야 세무서	048-521-2905	구마가야시 나카마치 41	
가와구치 세무서	048-252-5141	가와구치시 아오키 2-2-17	
니시카와구치 세무서	048-253-4061	가와구치시 니시카와구치 4-6-18	
우라와 세무서	048-600-5400	사이타마시 주오구 신도신 1-1 사이타마 신도심 합동청사 1호관	
오오미야 세무서	048-641-4945	사이타마시 오오미야구 도테초 3-184	
교다 세무서	048-556-2121	교다시 사카에초 17-15	
치치부 세무서	0494-22-4433	치치부시 히노다마치 1-2-41	
도쿄로자와 세무서	04-2993-9111	도쿄로자와시 나미키 1-7	
혼조 세무서	0495-22-2111	혼조시 에키난 2-25-16	
히가시마쓰야마 세무서	0493-22-0990	히가시마쓰야마시 야큐초 1-8-14	
가스카베 세무서	048-733-2111	가스카베시 오누마 2-12-1	
아게오 세무서	048-770-1800	아게오시 오야자 니시몬젠 577	
고시가야 세무서	048-965-8111	고시가야시 아카야마초 5-7-47	
아사카 세무서	048-467-2211	아사카시 혼마치 1-1-46	

현세에 대하여

현세사무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접수시간
사이타마 현세사무소	048-822-5131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기타우라와 5-6-5	월~금 (공휴일·연말연시 제외) 8:30~17:15
가와구치 현세사무소	048-252-3571	가와구치시 니시아오키 2-13-1	
아게오 현세사무소	048-772-7111	아게오시 미나미 239-1	
아사카 현세사무소	048-463-1671	아사카시 미하라 1-3-1	
가와고에 현세사무소	049-242-1801	가와고에시 아라이주쿠초 1-17-17	
도쿄로자와 현세사무소	04-2995-2112	도쿄로자와시 나미키 1-8-1	
한노 현세사무소	042-973-5612	한노시 나미야나기 353	
히가시마쓰야마 현세사무소	0493-23-8945	히가시마쓰야마시 로쿠켄초 5-1	
지치부 현세사무소	0494-23-2110	지치부시 히가시마치 29-20	
혼조 현세사무소	0495-22-5675	혼조시 아사히초 1-4-6	
구마가야 현세사무소	048-523-2809	구마가야시 스에히로 3-9-1	
교다 현세사무소	048-556-5067	교다시 혼마루 2-20	
가스카베 현세사무소	048-737-2110	가스카베시 오누마 1-76	
고시가야 현세사무소	048-962-2191	고시가야시 고시가야 4-2-82	

자동차세에 대하여

자동차세사무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접수시간
사이타마현 자동차세사무소	과세: 048-658-0226	사이타마시 오오미야구 시모초 3-8-3	월~금 (공휴일·연말연시 제외) 8:30~17:15
	납세: 048-641-2222		
자동차세 콜센터	0570-012-229		
사이타마현 자동차세사무소 오미야지소	048-623-0600	사이타마시 니시구 나카쿠기 2152	
사이타마현 자동차세사무소 구마가야지소	048-532-8011	구마가야시 교료이가하라 701-5	
사이타마현 자동차세사무소 도쿄로자와지소	04-2998-1321	도쿄로자와시 우시누마 690-1	
사이타마현 자동차세사무소 가스카베지소	048-763-4111	가스카베시 마스도 752-5	

주민세·경자동차세(지자체세)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제 13 장의 일람을 참조)에 문의해 주십시오.